

중 국

[월간 보고서]

베이징 인터넷법원, 플랫폼 저작권 책임 관련 전형사례 발표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발표한 8건의 플랫폼 저작권 책임 관련 전형사례를 통해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법 대응 방향을 살펴볼 수 있음. 법원은 플랫폼이 단순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서 능동적인 콘텐츠 분배자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직접 침해와 침해 방조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지-필요한 조치” 규칙의 실질적 요건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주의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였음.

1. 현황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전통적인 접속·전송·저장 형태에서 다원적인 통합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차량 인터넷·대형 인공지능 모델 등 신흥 산업과 기술 형태가 등장함. 이에 따라 인터넷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행위 역시 점차 복잡 다양화되고 있음.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18년 설립 이래 25만건 이상에 달하는 인터넷 관련 분쟁을 심리하며 디지털 시대의 사법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음. 설립 직후 접수된 첫 번째 사건은 불과 13초짜리 단편 영상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으로 당시 법원은 영상의 길이가 아닌 창작자의 개성적 표현 여부가 저작물 인정의 핵심이라는 판결을 내려 신흥 단편 영상 산업의 이정표적 판례를 수립한 바 있음. 나아가 2023년에는 전 세계 최초의 ‘AI 텍스트-이미지 생성’ 관련 저작권 사건을 심리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도 인간의 지적 투입과 개성적 표현이 반영된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AI를 사용한 인간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을 내렸음. 이 판결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번역·연구되었으며 AI 시대 법률문제에 대한 글로벌 사법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시대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저작권 생태 질서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6회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6년 4월 21일 <플랫폼 저작권 책임 관련 사건 심리 현황에 관한 기자회견(涉平台著作权责任案件审理情况新闻发布会)>을 개최하였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베이징 인터넷법원 부원장 쑤밍시(孫銘溪)가 사회를 맡았으며 소송접수부(소송서비스센터) 부장 리원차오(李文超)가 플랫폼의 저작권 책임과 관련된 8건의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플랫폼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본문에서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고 8건의 플랫폼 저작권 분쟁 전형사례를 살펴본 후 그 의의를 분석함.

2. 주요 내용

1) 플랫폼 저작권 침해 분쟁 현황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은 총 83,575건이며, 이미 종결된 사건은 85,527건임. 총 83,575건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 중 베이징 소재 플랫폼 기업이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24,000여 건으로 전체 인터넷 저작권 침해 분쟁의 약 29.04%를 차지함. 플랫폼 관련 저작권 사건에서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를 사유로 제기된 소송이 약 85.5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 유형이 광범위하고 인공지능 등 새로운 콘텐츠 생산 요소와 관련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신흥 분야의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작권 분쟁의 구조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2) 플랫폼 저작권 침해 사건의 특징

베이징 인터넷법원 부원장 자오창신(赵长新)은 플랫폼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에서 플랫폼이 수동적인 저장 서비스 제공자에서 능동적인 콘텐츠 배포자로 전환됨에 따라 플랫폼은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게이트키퍼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지능화, 네트워크화 기술이 전통 산업과 깊이 융합되면서 상류 기초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아래로 전파되어 스마트 단말 영역의 소송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임.

그 외에도 플랫폼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간이 절차와 소액 소송 절차의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사건 심리 기간이 비교적 짧아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속한 분쟁 해결에 편리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음.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온라인 소송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당사자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소송 비용의 절감과 분쟁 해결의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음.

3) 사건 심리 기본 원칙 및 제안 사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신기술, 신산업 환경에서 플랫폼 저작권 사건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판으로 규칙을 세우고 규칙으로 거버넌스를 촉진하며 거버넌스로 발전을 조력한다”는 재판 이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리 보호, 혁신 장려, 산업 발전 촉진의 유기적 통일을 지향함.

첫째, 기술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 즉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 저장 공간이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심사, 선별, 편집, 배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침해 방조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후자는 콘텐츠 제공자로서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아울러 본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8건의 전형사례에서는 플랫폼이 이용자 콘텐츠를 2차적으로 활용할 때의 법률적 지위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여러 주체 간 기술 협력과 분업 협력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함.

둘째, 분업 협력 침해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함. 다수의 주체가 기술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주체 간의 의사 연락, 합의 내용, 주의 의무 이행 및 수익 분배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침해 책임 여부를 판단함.

셋째, 침해 방조에서 과실의 판단 규칙을 명확히 함. 전형사례는 “통지-필요한 조치”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는 단순히 적시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성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반복 침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링크 삭제를 넘어 계정 폐쇄 등의 추가 조치가 요구됨을 분명히 함. 이를 통해 플랫폼 기업이 저작권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네트워크 저작권 생태계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유도함.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상술한 세 가지 심리 원칙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의 저작권 거버넌스 작업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함. 첫째, 콘텐츠 협력 모델을 정비하고 침해 공동 방지 체계를 완비하여 생태 협력 체계 최적화, 둘째, 통지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정밀한 모니터링 전략을 실시하며 이용자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내부 거버넌스 체계 강화, 셋째, 저작권 식별, 필터링 등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 업계 표준과 자율 공약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술이 거버넌스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3. 사례 소개

1) 사례 1: 동일 저작물에 대한 침해로 피소된 적이 있는 플랫폼이 다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① 사실관계

A 회사는 인기 드라마인 사건 드라마의 독점적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보유하고 있음. A 회사는 B 회사가 운영하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사건 드라마를 잘라서 만든 불법 영상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B 회사를 상대로 침해 방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음. 그 후 해당 플랫폼 사용자 C 씨가 사건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잘라낸 후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 분쟁 영상으로 가공한 다음 플랫폼에 업로드하였음. 이에 대해 A 회사는 C 씨의 행위가 직접 침해에 해당하며 B 회사가 A 회사로부터 적법한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 C 씨가 분쟁 영상을 업로드한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한편 B 회사는 이전에 사건 드라마와 관련된 대량의 불법 영상 전파에 대해 침해 방조책임을 부담한 적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B 회사는 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 즉 통상적인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의 방법보다 적극적이고 정밀한 심사 전략과 필터링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침해 행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함. 그러나 본 안건에서 B 회사는 적법한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7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분쟁 영상을 삭제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해 과실이 존재하므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에 대한 침해 방조

가 성립함. 법원은 B 회사와 C 씨가 공동으로 A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③ 선정 의의

최근 몇 년간 롱폼 동영상 플랫폼과 숏폼 동영상 플랫폼 간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음. 본 안건에서 법원은 플랫폼이 침해 방조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권리자가 주장하는 특정한 직접 침해의 사실과 그 규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B 회사가 이전에 동일한 사건 드라마와 관련된 대량의 분쟁 영상 전파로 인해 이미 침해 방조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해서 권리자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다른 사용자의 새로운 전파 행위를 근거로 다시 플랫폼의 침해 방조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또한 플랫폼이 침해 방조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책임을 부담한 후에는 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정밀한 심사 전략과 필터링 조치를 취하여 침해 행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함. 본 안건은 플랫폼의 침해 통지에 대한 대응 시한 요건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반복 침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는 사법적 방향성을 보여줌.

2) 사례 2: 지속적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① 사실관계

A 회사는 사건 예능 프로그램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국가 판권국의 <중점저작물 저작권 보호 사전 경고명단>에 등재되어 있음.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A 회사는 사건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 전 매 회차의 방영 전 및 매 회차 방영 종료 당일 저녁마다 모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B 회사에 권리 사전 경고 이메일을 발송함. 사건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이 종료될 때까지 A 회사가 B 회사에 발송한 각종 사전 경고 이메일은 누적 32회에 달함.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 사건 예능 프로그램을 편집한 대량의 분쟁 영상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음. A 회사는 B 회사가 플랫폼 내에 대량의 분쟁 영상이 존재함을 명확히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 예능 프로그램이 <중점저작물 저작권 보호 사전 경고명단>에 등재되어 있고, A 회사가 사건 예능 프로그램의 첫 방영 전과 방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전 경고 이메일과 삭제 통지를 발송하면서 방영 기간 중의 분쟁 영상의 링크와 침해 사용자 명단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회사는 사건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이 모두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모든 분쟁 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B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해 지배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며 해당 플랫폼 사용자가 분쟁 영상을 집중적으로 업로드하는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정보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예방하고 통제하지 않아 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확대되도록 하였음. 따라서 B 회사는 분쟁 침해 행위에 대해 과실이 존재하며 침해 방조가 성립하므로 경제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③ 선정 의의

본 사건은 차단 필터링 가로채기 등의 기술적 수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환경에서 “통지-필요한 조치” 규칙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지속적 사전 경고는 유효한 사전 통지를 구성할 수 있으며 통지의 효력을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미래의 침해 행위로까지 확장할 수 있음. 플랫폼이 적절한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사건 저작물의 첫 방영 및 인기 방영기간 동안 추후 방송 형식의 침해 행위가 발생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기술적 수단과 조치를 취해야 함. 적절한 사전 통지의 효력 인정은 새로운 이익 균형의 실현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산업 발전 촉진에 기여함.

3) 사례 3: 반복 침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침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단순히 링크 삭제만 실시하고 계정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① 사실관계

A 회사는 사건 드라마의 독점적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보유하고 있음. B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가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사건 드라마의 회차 전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였고, 이에 대한 100건이 넘는 링크가 생성되었음. A 회사는 2개월 동안 B 회사에게 20여 차례 침해 신고 통지를 발송하였고, 신고 후반기에는 해당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음. 그러나 B 회사는 매번 통지를 받은 다음 날 해당 불법 동영상의 링크만을 삭제하였을 뿐 불법 업로드를 실시한 계정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이에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침해 방조 성립을 주장하며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한 침해 계정을 명확히 지목한 다수의 적법한 통지를 받은 후 해당 사용자에게 반복 침해 행위가 존재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B 회사 운영 플랫폼에 사건 드라마 전체 회차가 업로드되어 있으며 해당 드라마의 명칭과 회차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 정황이 명백함. A 회사가 신고 과정에서 사건 드라마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계정에 대한 폐쇄 조치를 명확히 요구하였음에도 B 회사는 해당 계정에 대해 분쟁 영상 삭제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후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계정이 여전히 사건 드라마 십 여 회차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를 방치하였음. B 회사는 자사 플랫폼 사용자에게 대한 관리 능력과 상응하는 커뮤니티 규범 및 신용 규칙을 갖추고 있음에도 단순한 링크 삭제 처리만을 취하여 반복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관적 과실이 존재하여 침해 방조가 성립함. 이에 법원은 B 회사에게 경제적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함.

③ 선정 의의

본 사건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반복 침해 사용자에게 대해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경계와

필요한 조치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 플랫폼이 동일한 사용자를 지목하는 다수의 유효한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단순히 '통지-삭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집행하면서 사용자가 침해 콘텐츠를 반복 업로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권리자가 실질적으로 효과없는 신고를 반복하게 됨. 따라서 필요한 조치의 실질적 요건은 적시성 외에도 실효성을 포함하며 그 조치의 효과는 플랫폼 내에 명백한 침해 콘텐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에 도달해야 함. 본 안건의 판결은 네트워크 플랫폼이 반복적인 침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 저작권 질서의 규범화에 기여함.

4) 사례 4: 플랫폼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우선 추천"을 설정하고 2차 유통한 경우

① 사실관계

A 씨와 B 씨는 유명 작가로서 사건 소설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A 씨와 B 씨는 C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자신들의 허가 없이 사건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분쟁 오디오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분쟁 오디오 콘텐츠의 재생 페이지에는 해당 콘텐츠가 D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작가의 성명은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A 씨와 B 씨는 C 회사와 D 회사가 공동으로 자신들의 사건 소설에 대한 서명권, 복제권,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와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의 배상을 청구함.

② 법원의 판단

C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상의 분쟁 오디오 콘텐츠는 D 회사의 오픈 플랫폼상의 분쟁 오디오 콘텐츠를 API 방식으로 호출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됨. 분쟁 오디오 콘텐츠는 D 회사의 오픈 플랫폼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D 회사가 해당 오디오 콘텐츠를 원본 오디오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자사의 오픈 플랫폼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작권 허가 자료, 업로드 시간, 평점 상황, 진행자 신분 등의 내용을 심사하였고, 분쟁 오디오 콘텐츠에 대해 '우선 추천'이라는 태그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D 회사가 자사의 오픈 플랫폼 상의 콘텐츠에 대해 심사 선별 및 편집 행위를 실시하였음을 의미함. 이러한 과정에서 D 회사의 신분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서 콘텐츠 제공자로 전환되었으며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실시한 것이 됨. 이러한 행위는 A 씨와 B 씨가 사건 소설에 대해 향유하는 서명권, 복제권,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원은 D 회사에게 A 씨와 B 씨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③ 선정 의의

본 안건은 플랫폼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2차로 이용하는 경우 침해 책임을 확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에 대해 심사, 선별, 편집, 우선 추천 태그 등을 하면서 그 제공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플랫폼의 역할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서 콘텐츠 제공자로 전환되며 그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유통 행위에

대해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함. 본 사건은 플랫폼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저작물 유통 범위를 확장하고 데이터 자원 이용 방식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새로운 유통 기술이 가져오는 트래픽 및 수익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여 저작물 유통을 위한 건전하고 질서 있는 경로를 모색해야 함을 시사함.

5) 사례 5: 플랫폼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침해 콘텐츠를 동기화 배포하여 직접 침해를 구성한 경우

① 사실관계

A 씨는 사건 사진 저작물을 B 회사가 운영하는 X 웹사이트에 업로드함. 그 후 A 씨는 X 웹사이트에 공유된 사건 사진이 B 회사가 운영하는 Y 미니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배포된 사실을 발견함. X 웹사이트의 사용자 약관에 명시된 콘텐츠 배포 경로에는 Y 미니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A 씨는 B 회사가 자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및 서명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가 X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A 씨가 업로드한 사건 사진 저작물을 A 씨의 동의 없이 자사가 운영하는 Y 미니프로그램에 배포한 행위는 콘텐츠의 능동적 제공자로서 행한 행위이므로 A 씨가 향유하는 서명권과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법원은 B 회사에게 A 씨에 대한 공개 사과 및 경제적 손해배상을 판결함.

③ 선정 의의

본 사건은 플랫폼이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사용자 콘텐츠를 자동 동기화 배포하는 경우의 책임 인정에 관련됨. 플랫폼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특정 플랫폼에 게시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플랫폼이나 채널에 배포하는 경우, 그 행위는 네트워크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직접 침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함. 이러한 판단은 플랫폼이 알고리즘 등의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통합과 배포시 부담하는 법적 역할을 정확히 확정하는 데 기여하며, 플랫폼이 플랫폼 간 콘텐츠 통합·배포 업무를 전개할 때 반드시 적법한 권한을 취득하고 사용자에게 그 콘텐츠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함을 시사함.

6) 사례 6: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인화 추천에 그치고 차별화된 소개를 형성하지 않아 침해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 사실관계

A 회사는 다수의 사건 소설에 대한 녹음제품 제작자로서의 저작권접권을 보유하고 있음. A 회사는 B 회사가 자사의 허가 없이 B 회사가 운영하는 X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 스피커 등을 통해 공중에게 사건 소설을 녹음한 분쟁 오디오의 온라인 재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분쟁 오디오가 X 애플리케이션의 추천 페이지에 노출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B 회사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분쟁 오디오가 제3자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B 회사는 단지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직접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또한 X 애플리케이션에 설정된 추천 페이지의 콘텐츠는 사용자의 과거 이용 행위와 입력 내용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 알고리즘을 통해 동적으로 생성된 것으로서 플랫폼이 인위적으로 특정 저작물을 선별 편집하여 능동적으로 추천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B 회사가 분쟁 오디오에 대해 능동적인 설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침해 통지를 받은 후 적시에 링크를 차단하였으므로 그 행위는 침해 방조를 구성하지 않으며, A 회사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함.

③ 선정 의의

본 사건에서는 사용자 행위에 기반한 개인화 알고리즘 추천과 저작권법상 “알았어야 하는” 침해를 구성하는 능동적 추천 행위를 구분하였고, 단순히 알고리즘 기술이 추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플랫폼이 능동적인 선별, 편집, 추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플랫폼이 저작물에 대해 차별화된 소개를 진행하여 해당 저작물이 사용자의 주된 관심을 받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본 사건은 플랫폼 책임의 인정에 신중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간의 균형을 도모함.

7) 사례 7: 스마트 단말기가 제3자 자원을 이용한 수익 모델로 직접 수익을 얻은 경우

① 사실관계

A 회사는 사건 드라마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A 회사는 사용자가 B 회사가 운영하는 가정용 스마트 스크린(智能屏)¹⁾에서 사건 드라마의 명칭을 검색하면 웹하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해당 웹하드 사용자가 게시한 웹하드 공유 링크와 추출 코드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사용자가 유료 회원이 되면 스마트 화면에서 직접 웹하드에 저장된 사건 드라마의 전체 회차를 모두 시청할 수 있으며 고화질 시청, 배속 재생 등 회원 전용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A 회사는 B 회사가 자신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지출의 배상을 청구함.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가 가정용 스마트 스크린 시스템의 운영자로서 제3자의 웹하드 자원을 이용하여 웹하드 동영상의 완전한 재생 서비스를 자사 유료 회원 해택으로 판매하면서 직접 수익을 얻고 있음이 인정됨. 이와 같은 수익 모델을 통해 B 회사는 웹하드 링크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하는 것에 매우 높은 침해 위험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

1) 스마트 스크린이란 지능형 기능을 갖추어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화면 디스플레이 장치를 의미함.

떠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적 예방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자신의 사업 모델 및 수익 상황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 침해가 성립함. 법원은 B 회사가 A 회사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을 배상할 것을 판결함.

③ 선정 의의

본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과 인터넷 산업이 깊이 융합된 환경에서 스마트 단말기의 플랫폼화 운영이 야기하는 침해 책임 인정에 관한 전형사례임. B 회사는 가정용 스마트 스크린을 매개로 하여 웹하드 등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동영상 재생 서비스를 수익 모델로 삼아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공 단계에 깊이 개입함. B 회사는 해당 수익 모델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으면서도 침해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방지하지 않았으므로 방조 침해의 주관적 과실이 인정되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함. 스마트 단말기는 이미 전통적인 의미의 전자제품 제공자에서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이러한 플랫폼 제공자의 주의 의무는 그 사업 모델과 부합해야 하고 스마트 단말기라는 명목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8) 사례 8: 스마트 차량 기업이 운영하는 차량 플랫폼이 차량 소프트웨어 콘텐츠 선별 및 수익 분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① 사실관계

A 회사는 사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 A 회사는 C 회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모 브랜드 자동차에서 B 회사가 개발한 차량용 노래방 소프트웨어인 X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함. X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 브랜드 자동차 사용자에게 사건 노래의 재생 및 노래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B 회사가 자사의 상품 마이크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구매자에게 X 애플리케이션 회원권을 증정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련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 A 회사는 B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자사의 사건 노래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B 회사 및 C 회사에 대해 공동으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② 법원의 판단

법원은 X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 B 회사가 관리자의 허가 없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건 노래를 제공한 행위는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한편 C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을 검토함. 첫째, C 회사와 B 회사 사이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연락이 존재하지 않음. 두 회사가 체결한 총 서비스 협의서는 B 회사가 C 회사 생산 차량에 X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설치한다는 내용일 뿐 특정 저작물에 대한 협력 제공을 약정한 것이 아님. 둘째, C 회사는 차량 시스템 제공자로서 B 회사에게 X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콘텐츠의 합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형식적 심사를 진행하여 차량 시스템 플랫폼으로서의 기초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 셋째 X 애플리케이션은 B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직접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고, C 회사는 X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

지 않으므로 공동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최종적으로 법원은 B 회사에게 A 회사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권리 보호 비용의 배상을 판결함.

③ 선정 의의

스마트 차량에 설치된 시스템 단말기의 기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차량 기업이 부담하는 소송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 본 사건은 스마트 차량이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차량 생산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분업 협력의 공동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 측이 체결한 협의의 내용 주의 의무의 이행 및 수익 모델 등 구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과 저작권법의 공동 침해에 관한 기본 규정에 따라 인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본 사건은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분쟁이 스마트 차량 단말기 영역으로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산업 협력의 안정과 규범적 발전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음.

4. 사례 분석

앞서 소개한 8건의 전형사례는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디지털 경제 발전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저작권 침해에 대해 통일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별화된 책임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사례들은 저작권법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1) 플랫폼의 법적 지위에 따른 직접 침해와 침해 방조의 구별

플랫폼이 콘텐츠 전파 과정에서 부담하는 저작권 책임의 종류는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직접 침해와 침해 방조로 구분됨. 사례 4에서 D 회사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분쟁 오디오 콘텐츠를 자신의 오픈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허가 자료, 업로드 시간, 평점, 호스트 신분 등을 심사하고 분쟁 오디오 콘텐츠에 우선 추천 태그를 설정하는 등의 능동적 선별, 편집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D 회사의 신분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서 콘텐츠 제공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여 직접 침해 책임을 인정함. 마찬가지로 사례 5에서 B 회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X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Y 미니프로그램과 동기화하여 이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B 회사를 콘텐츠의 능동적 제공자로 보아 직접 침해 책임을 인정함.

이와 대조적으로 사례 1, 2, 3은 플랫폼이 사용자의 침해 콘텐츠 업로드 행위에 대해 부담하는 침해 방조책임의 인정 기준을 보여줌. 이들 사례에서 플랫폼은 직접 침해 콘텐츠를 제공한 주체가 아니지만, 플랫폼 사용자의 직접 침해 행위에 대해 적시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침해 방조책임을 부담함. 사례 6은 플랫폼이 단순한 링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알고리즘 추천 기능만을 운영하는 경우 능동적 선별, 편집, 추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보아 침해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판단 기준은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발표한 통계에서 플랫폼 관련 저작권 사건의 85% 이상이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를 사유로 한다는 사실과 부합함. 즉 플랫폼이 어떠한 방식으로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그 책임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됨. 플랫폼이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심사, 선별, 편집 분배하여 그 결과 새로운 전파 행위가 형성된 경우 플랫폼은 콘텐츠 제공자로서 직접 침해 책임을 부담하며 플랫폼이 단지 플랫폼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 저장 공간이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통지-필요한 조치” 규칙에 따라 침해 방조책임 여부가 판단됨. 이러한 플랫폼 제공자 책임 판단 구분 기준은 플랫폼의 사업 모델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플랫폼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2) “통지-필요한 조치” 규칙에서 필요한 조치의 실질적 요건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플랫폼 제공자가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 침해 결과의 확대된 부분에 대해 침해 행위를 한 사용자와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전형사례는 “통지-필요한 조치” 규칙의 적용에서 필요한 조치의 실질적 요건이 단순한 적시성을 넘어서 효과성을 포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사례 1에서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적법한 통지를 받은 후 7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분쟁 영상을 삭제 처리하였는바 이는 적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방조 침해가 인정되었음. 특히 법원은 B 회사가 이미 동일한 콘텐츠와 관련된 침해로 이미 한 차례 침해 방조책임을 부담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는 단순 삭제, 링크 차단 등의 방법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정밀한 심사 전략과 필터링 조치를 적용해야 함을 의미함.

사례 3은 필요한 조치의 효과성 요건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줌. 본 사례에서 B 회사는 A 회사의 20여 차례의 침해 신고 통지를 받을 때마다 저작권 침해 링크를 삭제하였으나, 동일한 플랫폼 사용자가 4개월 동안 100여 건의 침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정 폐쇄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사용자가 그 후에도 사건 드라마의 회차 전체를 십 여 건 추가로 업로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법원은 필요한 조치의 효과는 플랫폼 내에 명백한 침해 콘텐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단순한 통지-삭제의 기계적 실행이 필요한 조치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2는 통지의 시간적 효력 범위를 확장한 사례임. 법원은 사건 예능 프로그램이 국가판권국의 <중점저작물 저작권 보호 사전 경고명단>에 등재된 상황에서 A 회사가 32회에 걸쳐 발송한 사전 경고 이메일이 적법한 사전 통지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이러한 사전 통지의 효력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미래의 침해 행위까지 확장되며, 플랫폼은 이러한 사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인기 방영기간 동안 추후 방송 형식의 침해 행위가 발생할 합리적 가능성을 인정한 상황에 놓이게 됨. 이는 콘텐츠 심사 및 차단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 수단이 발전하고 있는 환경에서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능동적 모니터링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를 가짐.

(3) 신기술 환경에서 플랫폼의 주의 의무 범위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알고리즘 추천 스마트 단말 차량 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이 등장하면서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주의 의무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요구됨.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전형사례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플랫폼의 주의 의무가 그 사업 모델과 수익 구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줌.

사례 6은 알고리즘 추천 기술에 대한 책임 인정 기준을 제시함. 법원은 사용자의 과거 행위와 입력 내용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동적으로 생성되는 개인화 알고리즘 추천은 플랫폼이 인위적으로 저작물을 선별, 편집하여 능동적으로 추천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함. 알고리즘 기술이 추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플랫폼이 능동적인 선별, 편집, 추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저작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소개를 진행하여 해당 저작물이 플랫폼 사용자의 주된 관심을 받도록 하였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됨. 이는 기술 혁신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신중한 태도임.

사례 7은 스마트 단말기의 책임 범위를 확장한 사례임. B 회사는 가정용 스마트 스크린에 웹하드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유료 회원에게 해당 웹하드의 동영상의 고화질, 배속 재생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공 단계에 깊이 개입하여 그로부터 직접적인 수익을 얻었음. 법원은 플랫폼이 이와 같은 사업 모델이 매우 높은 저작권 침해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적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 모델 및 수익 상황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침해 방조책임을 인정함. 이는 플랫폼의 주의 의무 범위가 그 사업 모델 및 수익 구조와 직접 연계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임.

사례 8은 스마트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차량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사이의 책임 분담 기준을 제시함. 법원은 차량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분업 협력으로 인한 공동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측이 체결한 협의의 내용 주의 의무 이행 및 수익 모델 등의 구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C 회사가 B 회사와 특정 저작물의 협력 제공을 약정하지 않은 점, 콘텐츠 합법성에 대한 형식적 심사 의무를 이행한 점, X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 침해의 의사 연락과 이익 공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C 회사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음.

5. 시사점

본문에서 소개한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8건의 플랫폼 저작권 책임 관련 전형사례는 플랫폼 제공자의 역할에 따라 그 법적 지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실효성 있는 “통지-필요한 조치” 규칙을 재정립하며, 사업 모델과 수익 구조를 고려한 플랫폼 책임 설정 등의 심리 원칙을 통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 환경에서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저작권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北京互联网法院召开涉平台著作权责任案件审理情况新闻发布会, 北京互联网法院, 2026年4月21日

- https://mp.weixin.qq.com/s/0AxPa8Bb_hhFvqYyGMQMrw

"全国网络普法行·北京站"-孙铭溪: 数字时代的司法答卷, 北京互联网法院, 2025年11月22日

- <https://mp.weixin.qq.com/s/NIN0-FTfwiy4US7q1Wqy9w>